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211469(본소), 2023나21147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211469(본소), 2023나211476(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가단10054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장민후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가단100547(본소), 2022가 단100554(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2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반소에 관한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제1항부터 제3항(일부)까지(제2쪽 10째 줄부터 제4쪽 마지막 줄까지, 제1심판결문 제6쪽 별지 ‘피해 물품 금액’ 포함)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2째 줄의 ‘(본소청구원인)’, 7째 줄의 ‘(반소청구원인)’을 삭제하고, 10째 줄을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2째 줄과 3째 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시작된 2020. 7.경부터 2021. 2. 6.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의 합계금액인 231만 원은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적어도 2021. 2. 7.부터 2022. 2. 5.까지 약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합계금액인 462만 원은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미지급 차임의 감액 없이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12개월 동안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데 일부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장의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침수 피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데 일부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도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1째 줄, 12째 줄, 18째 줄, 20째 줄의 각 ‘200만 원’을 각 ‘500만 원’으로

고치고, 18째 줄의 '738만 원'은 1,038만 원'으로, 19째 줄의 '1,000만 원'은 '538만 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인 738만 원 및 그중 임대차보증금 538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다음 날인 2022. 2. 6.부터, 위자료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 10.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신진화, 판사 오재성